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79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이해식・김성환・박상혁

박정현 · 신정훈 · 김영호

황명선 • 윤준병 • 서영석

민병덕 · 서영교 · 염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검사는"을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사법경찰관은"으로,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고발을 접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공소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③ (생 략)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4
경우에는 <u>검사는</u> 고발장이 접	검사(고위공직자범죄
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	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
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u>검찰총</u>	한다), 사법경찰관은
<u>장</u> 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u>고</u>
한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검찰총
	<u>장 또는 경찰청장</u>
<u> <신 설></u>	⑤ 제1항에 따라 고발을 접수
	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기관(공
	소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
	단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형
	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
	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